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57호 2015. 5. 19. (화)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5-34호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377호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5-34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221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362,328,583	100.00%	326,845,552	100.00%	35,483,031	10.86%
일반회계	324,592,942	89.59%	290,401,644	88.85%	34,191,298	11.77%
특별회계	37,735,641	10.41%	36,443,908	11.15%	1,291,733	3.54%
공기업특별회계	8,884,689	2.45%	8,884,689	2.72%	0	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84,689	2.45%	8,884,689	2.72%	0	0.00%
기타특별회계	28,850,952	7.96%	27,559,219	8.43%	1,291,733	4.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8,921	0.17%	627,046	0.19%	1,875	0.3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1,600	0.03%	121,600	0.04%	0	0.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13,634	0.03%	113,634	0.03%	0	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52,000	0.15%	552,000	0.17%	0	0.00%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2,815,520	0.78%	1,883,570	0.58%	931,950	49.48%
주택사업특별회계	394,000	0.11%	394,000	0.12%	0	0.00%
주차장특별회계	218,000	0.06%	218,000	0.07%	0	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4,007,277	6.63%	23,649,369	7.24%	357,908	1.51%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5-377호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께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공포시행(14.11.7)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법령·조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 나. 정선군의 원활한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청·장년’, ‘대상기업’, ‘일자리보조금’등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기준,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및 예산집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라. 보조금 분담 요율 등을 명시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단체)는 201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 233-701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FAX : 033-560-2150 / 033-560-2594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내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인 업체
2.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3. 청·장년 5명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선정 업체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군은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2. 대상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대상기업의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 교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② 대상기업은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월 이내 퇴직 시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한 대상기업은 향후 5년간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의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의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의 구체적 사항은 강원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